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 - 43호**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**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-12호(2005.3.14)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된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06년 9월 29일

종 로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/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1-1번지의외 13필지
3. 정비구역 면적 : 7,823.20㎡(사유지: 3,496.11㎡, 국·공유지: 4,327.09㎡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2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06년 9월 25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○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	용도
사업규모	7,823.2	1,496.46	19.13	25,319.36	211.91	지하2~ 지상15층	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
○ 분양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공동주택			비 고
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
계	152	25,319.36	7,823.20	
조 합 원	60	10,005.90	3,096.91	
일반분양	80	13,320.34	4,110.74	
임대분양	12	1,993.12	615.55	

○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

구 분	신 설			용도폐지		
종류	계	도로	시설녹지	계	도로	시설녹지
규모(㎡)	-	-	-	1,912.5	1,355.3	557.2

7. 기타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계도서는 고시를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2~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6- 44 호

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조정 고시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조정을 고시합니다.

2006년 9월 29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대 상 시 설			재난위험 시설 등급변경	위험 등급	안전점검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	기타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 설 명	소 재 지	소 유 자 (점유자, 관리자)				
삼일시민 아파트 10동	종로구 송인동 1435	서울시외 23인	E	D	'06.7.24~9.18 (주)서울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안전 점검결과	
삼일시민 아파트 12동	종로구 송인동 1435	서울시외 22인	E	D	'06.7.24~9.18 (주)서울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안전 점검결과	

공 고**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6 - 488호****도로굴착사업계획 제출공고**

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하매설물(전기, 전화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 등)의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06년도 4/4분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6년 9월 일

종 로 구 청 장

1. 신청대상 :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
2. 신청기간 : 공고일부터 2006년 10월 16일까지
3. 구비서류 :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참조
4. 접 수 처 : 종로구청 토목과(☎731-1500,1664)
5. 신청요령
 - 가.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, 전화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나.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종로구청장의 도로점용(굴착·복구)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- 다.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- 라.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.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로 문의(☎731-1500, 1664)하시기 바랍니다.